

검찰개혁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있다

최근 국회의원 폭력행위사건, PD기자수첩사건, 전교조 사건,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등 일련의 하급심 무죄 판결에다가 스폰서 검사 사건마저 불거져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공수처의 설치나 상설특검제도의 도입 또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재정심사회의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된 사건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개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뇌물사건이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등 이른바 ‘굵직한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건들은 검찰의 전체 처리사건을 놓고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냉정히 따져보면 일반 서민들의 법률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검찰개혁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큼직한 사건만을 전제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검찰개혁을 논하게 된다면 자칫 개혁의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고위 공직자, 중요 정치인, 대기업 간부 등 일부 상위층만을 위한 검찰개혁, 이들 상위계층의 비리를 검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권층만이 그 개혁의 성과물을 향유하는 방향의 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러한 개혁일수록 마치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개혁인 양 호도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는 개혁, 우리 사회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폭력사건, 교통사건, 고소사건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을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부모의 입장, 음주운전한 자동차에 치여 장을 잃은 처자식의 입장,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사기당한 노

노 명 선

-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인들의 입장,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빠른 피해회복, 범죄로부터 잃어버린 사회평화의 회복을 위해 검찰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바람직한 형사사법의 목적이나 이념은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수립이후 50년 동안 우리의 형사사법은 ‘정밀사법’이라는 이름하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강조해 온 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한 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 인권침해적인 검찰활동마저 존재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특수부에서 오랜 경험을 한 필자로서는 그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검사들의 ‘권력지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절대화’된 실체적 진실을 지향하는 검찰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 검찰개혁 논의와 같이, 수사의 적정절차만을 강조하거나 인권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내세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나 책임에 상응한 형벌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과 형벌 집행권의 적정한 행사와 그로 인한 사회 방위라는 측면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만이 형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선진사법국가와 같이 범죄에 의하여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 사회의 안정, 법적 평화의 빠른 회복을 형사법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때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절차적 정의 실현,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의 목적을 이와 같이 ‘잃어버린 평화의 회복’에 둔다면 실체적 진실 추구는 상대화되고, 종래 실체적 진실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자행하여 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사

절차 또한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포착하지 않고 법적평화를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동을 요구하는 절차로 진전해 나갈 것이다.

필자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동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곧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아픔과 피고인의 애환을 싸잡아 국민의 시각에서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참 뜻이고 존재의미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법관의 전유물이었던 사실인정권한을 비전문가인 배심원과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인정 주체의 변화는 법원은 물론 입심책임을 부담하는 검찰로 하여금 종전 수사관행을 대폭 바꾸게 할 것이다. 종전의 불합리한 수사관행에 의한 수사결과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과 설득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해가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영상녹화의 전면실시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형사절차가 빨리 종료되길 희망하는 피의자에게는 Fast-Track을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검사의 적극적인

중재역할, 입증방법에 관하여 검사와 피의자간 합의문서의 작성 등 다양한 시도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수사의 종국적인 처분이나 불복심사과정에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21세기 재판은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 검찰권이나 재판권 모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국민의 참여와 통제 하에서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대폭적인 확대 시행, 주권자인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야말로 사법개혁을 이끌어 내는 核心動因이고, 검찰개혁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주춤해져 가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